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거리두기 기준 및 실행방안(5-2차 개정안)

■ 5-2차 개정 : 제7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(2021.12.07.(화))

■ 적용 기간 : 2021. 12. 13.(월) ~ 별도 안내 시 까지

※ ERICA 학술정보관의 2022년 2학기 기말고사 적용 기간 : 2021.12.06.(월) ~ 2021.12.21.(화)

■ 백신패스 적용 : 도서관, 식당 및 카페, 실내 체육시설 등 (계도기간 2021.12.06. ~ 2021.12.12.)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ERICA 사회적 거리두기

구 분		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
수 업		대면·원격(비대면) 수업(병행) * 이동식 좌석의 경우 좌석 한 칸(두 칸) 띄우기에 준하여 거리두기 준수)
		대면 수업 시 좌석 두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한 칸)
강당, 체육관, 무용실 등		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
음악 계열		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중간·기말 시험		대면 시험 원칙 (불가피한 경우,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시험 가능)
회의·집합·모임·행사*	부서장 승인	실내외 100명 미만 : 기본 방역수칙 준수, 백신 접종증명, 음성 확인제 필요 없음
	일북단 승인	1. 실내외 100~499명 : 기본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접종증명·음성 확인제 적용 2. 실내외 500명 이상 행사 개최 금지 (단 국가 필수 시험 및 부득이한 경우 감관위 및 지자체 협의 및 승인 후 진행)
단과대학 행정팀 관리 운영 시설물 (실습실, 독서실, 자유열람실, 오픈스페이스)		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실시 (운영시간 : 최대 자정(24시),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준용)
행정실 / 연구소(실)		정상 근무(필수 재택근무 대상 재택근무 유지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, 부서장 재량으로 필요 시 유연근무 활용)
ERICA 학술정보관 (학기중) (백신패스 적용)	주중	일반열람실(제1, 2, 3열람실) : 08:00 ~ 22:00 / 자료열람실 : 09:00 ~ 21:00
	주말	일반열람실(제1, 2, 3열람실) : 08:00 ~ 22:00 / 자료열람실 : 휴실
	주중	일반열람실(제1, 2, 3열람실) : 08:00 ~ 24:00 / 자료열람실 : 09:00~21:00
	주말	일반열람실(제1, 2, 3열람실) : 08:00 ~ 24:00 / 자료열람실 : 휴실
구내 식당		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용 (영업시간 제한 없음)
식당 및 카페 (백신패스 적용)		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용 및 방문자 명부 작성(전자/수기) 백신패스 의무 도입 및 적용
발열검사		유인검사 또는 무인검사
실외 체육시설		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(종목별 경기 인원의 1.5배)만큼 이용 가능 ※ 예약제 실시 및 예약 시 인원 제한, 체육 경기를 제외한 행사 진행 시 행사 기준 준용
실내 체육시설 (백신패스 적용)		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(예약 및 증명 필수) ※ 예약제 실시 및 예약 시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인원 필수 확인, 체육 경기를 제외한 행사 진행 시 행사 기준 적용
학생자치시설 (학생회실, 동아리실)		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※ 최대 6명(백신 미접종자 최대 4명), 이용시간 22시까지, 취식금지, 마스크 등 기초 방역수칙 이행 불가 시설 이용 금지 ※ 허용 최대인원 초과 행사 시 장소 변경 및 주관부서 허가를 통한 진행(강의실 방역 및 행사 운영 기준 적용)

※ 공통사항 : 단계별 방역수칙 반드시 준수

①마스크 착용, ②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(QR-PASS 또는 수기) ③출입자 증상 확인(발열체크 등)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
④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(※최소 1m 간격 유지) ⑤손소독제 비치 ⑥환기 및 소독

[법적 근거] ▶감염병예방법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
(중대본) ①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준수 조치
(지자체) ②행정조치 및 현장점검 ③과태료 부과, 고발조치 ④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⑤시설 운영중단 명령
(대 학) ⑥과태료 및 벌금 납부 ⑦고발 ⑧확진자 발생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⑨시설운영 중단